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5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김 윤 · 윤준병 · 최혁진
이병진 · 전현희 · 이수진
권칠승 · 이주희 · 곽상언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경제적 지원 강화, 양육 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해 왔지만,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저출생 문제의 근간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으나, 성장과정에 있는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하 “소아청소년”이라 함)의 건강과 관련된 양육부담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긴 대기시간, 야간과 휴일 응급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재 등과 같은 소아진료체계의 붕괴는 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소아청소년기의 적절한 건강 관리는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아청소년 보건의

료 관련 정책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연령과 발달 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아청소년이 성장과정에 맞추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소아청소년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소아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증진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및 보건의료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 건강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아청소년

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료권별로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12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소아청소년에게 성장과정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등을 위하여 소아청소년보건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 건강정책과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함(안 제17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 등과 의료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이 해당 학교 등의 소아청소년을 위하여 의료적 자문에 응하거나 학교 등에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공백 방지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여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타. 국가는 소아청소년을 대상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아청소년의 성장과정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소아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말한다.
4.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5. “진료권”이란 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위하여 의료이용 및 의료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 또는 그 묶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모든 소아청소년은 성장과정에서 사회공동체의 보

호를 받으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은 소아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③ 소아청소년은 자신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성별, 나이, 종교, 경제적 사정 및 거주지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을 지며,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위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 보호자 및 보건의료인 등에게 소아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소아청소년의 건강에 관하여 우선

적으로 책임을 지며, 소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소아청소년이 성장과정에서 단계별로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소아청소년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의료인의 책무) ① 보건의료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소아청소년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의료인은 소아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아청소년의 건강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실시

제8조(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건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소아청소년 건강 관련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3. 소아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4. 소아청소년 건강 관련 자원 확보 및 배분
5. 소아청소년 건강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6.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7. 이전 종합계획에 대한 분석·평가

8. 소아청소년 전문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그 밖에 소아청소년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종합계획은 제12조에 따른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진료권별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

하여 종합계획에 따라 소아청소년 건강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분석·평가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료권별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및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아청소년 건강정책

제12조(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 ①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소아청소년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3.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재정에 관한 사항
5.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소아긴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 아동·청소년, 소비자 및 환자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중양회,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그 밖에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보건의료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소아청소년 주치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하여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아청소년 주치의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대상이 되는 소아청소년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출산 전·후 시기 보건의료서비스
2. 소아청소년 비만, 영양상담, 건강증진
3. 소아청소년 마음 및 정신건강
4.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건강검진
5. 소아청소년 만성질환 관리, 치료
6. 장애 및 발달지연 소아청소년 재활, 발달지원 등 건강보호
7. 학대피해 소아청소년 건강보호
8. 소아청소년 중독예방 및 치료
9. 소아청소년의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등에 대한 치료지원
10. 소아청소년의 자살 및 자살 방지 관리
11. 소아청소년의 돌봄에 대한 의료적 지원
12.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보건의료서비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에게 제14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의료인,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지역별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소아긴급의료센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소아환자전문응급의료센터 등 소아청소년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진료권별로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체계 구축,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소아청소년보건의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체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 관계 기관 간 연계 등을 위하여 소아청소년보건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 소아청소년보건의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청소년보건의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소아청소년보건의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소아청소년 건강정책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 건강정책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교등 연계 의료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와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학교등의 소아청소년 건강 보호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연계체계에 따라 각 학교등과 연계된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학교등의 소아청소년에 대하여 의료적 자문에 응하거나 학교등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등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및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한 의료지원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학교등에 방문하여 진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아청소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계체계의 구축, 제2항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 및 정부 지원,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범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소아긴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실 과 밀화 해소 및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관 중에서 야간·휴일을 포함하여 상시적으로 경증 및 중등증(中等症)의 소아청소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소아긴급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소아긴급의료센터를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이나 진료 범위 등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아긴급의료센터의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아긴급의료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소아긴급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의 지정 및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에 대하여 전

문의료인력 배치, 의료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비용 보조,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를 말한다) 지원 등 해당 지역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종합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의료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소아청소년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소아청소년 진료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보상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 현황 및 해당 진료의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소아청소년 대상 진료의 요양급여비용의 적절성 여부를 심의 대상으로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

영한 의견을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소아청소년 건강정보체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의 건강상태 파악을 통하여 예방 중심의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사망원인 정보와 예방접종·건강진단·학교건강기록 등 소아청소년 건강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소아청소년 건강 지식의 확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건강, 영양, 운동 및 양육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소아청소년 건강 지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4조(소아청소년 건강 학술조사·연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아청소년 건강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소아청소년의 성장과정별 건강 문제에 관한 학술조사 및 연구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전담부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에 소아청소년 건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